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8 선고 2021가단112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2. 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10,686,172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8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2021. 8. 14.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대 46㎡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67,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, 7, 8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대 46㎡(이하 ‘D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토지에 접해 있는 수원시 권선구 F 대 100㎡(이하 ‘F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2017. 8. 2. 위 F 토지와 함께 위 D 및 F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F 토지를 넘어서서 원고 소유의 D 토지 중 일부에도 위치하고 있으며, D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및 마당 등으로 이용되어 결국 D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. 8. 2.부터 2021. 8. 13.까지 D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0,686,172원이며, 2021. 8. 2.부터 2021. 8. 13.까지 D 토지의 월임료 상당액은 267,9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, 그 이후 월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D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, ① 10,686,1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. 8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2021. 8. 14.부터 D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67,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희

목록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, F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

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

주택 80.19㎡

지하(보일러실) 7.74㎡

부속건물

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

면적 2.00㎡, 끝.

